

보도시점 10.24.(금) 조간 < 10.23(목) 12:00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 협업기반(플랫폼)으로 육성

-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3일(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핵심 협업기반(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빠른 변화로 인해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동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시장 대응능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 강화 및 공동사업 기반 확충

우선,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협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의요청권 도입은 중기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단체적 계약 체결시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록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으로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0조의2 신설) 개정안 주요 내용

- 오세희 의원('25.1.20), 김원이 의원('25.2.7) 발의
- ①중기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와 단체적 계약 체결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 요청 가능, ②상대방에 협의에 응할 의무 부여, ③미응대시 조정 신청, ④협의 및 필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 예외 허용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요 공동사업인 단체표준 지원체계 고도화를 추진하여 노후화된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체표준 인증전문가 양성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조합 주도의 표준화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합설립 전문상담(컨설팅)부터 공동사업 기획·운영 등 사업화 지원까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토록 디지털 전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대응 지원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종별·공정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활용·확산 분야를 발굴하고, 인공지능 전환·디지털 전환(AI·DX) 전환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부서를 설치('25.1월 조직개편)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가 절감과 원부자재 조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공공구매 지원프로그램을 해외 구매처까지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안내서(툴킷) 제작·보급 확대, 중대재해 예방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셋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수출 경쟁력 강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외거점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해외 현지에 상설 전시장·판매장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전세계(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거점 채널로서, 국제 개발협력(ODA)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역조합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등이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력산업·미래신사업 분야 신규조합 설립과 초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지역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 설립시 요구되는 법정 최저 발기인수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의 합병 및 조직 유형의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 설립의 주요 목적인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출자제도, 준조합원제도 등을 도입하여 자금 확보, 분야별 전문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합 상근이사의 연임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기술·글로벌 환경 변화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반(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책임자	과 장	예우영 (044-204-7444)
		담당자	사무관	허세명 (044-204-7449)
			주무관	목허균 (044-204-743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수립 배경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2조의2)에 의거, 3년 주기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이에 따라, 연구용역*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마련

2. 당면 과제

- (환경변화 대응)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 극복을 위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필요
- (수출 경쟁력 강화) 美관세정책,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경제·교역환경 재편에 따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수출환경 대응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 확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인프라 확대 필요

3. 수립 방향

- 「제4차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비전 및 5대 전략을 토대로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수립
 - (전략 1) 중기협동조합의 시장 대응능력 강화
 - (전략 2) 대내외 중기협동조합 환경변화 공동 대응
 - (전략 3) 중기협동조합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전략 4)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확대
 - (전략 5) 중기협동조합 제도 개선

4. 세부추진 과제

비전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는 협업플랫폼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시장 대응능력
강화

- ① 중기협동조합 협상력 강화
- ② 단체표준 지원체계 고도화
- ③ 조합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화

환경변화
공동대응

- ① 디지털 전환(AI · DX) 지원
- ② 원부자재 공동구매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 ③ 공동 기술개발(R&D) 확대
- ④ ESG대응 지원체계 강화

수출 경쟁력
강화

- ① 중기협동조합 수출역량 강화
- ② 글로벌 공급망 대응 역할 강화
- ③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참여 확대

지역경제
기반확대

- ① 지역경제 활성화 협업모델 구축 · 확대
- ② 지역 주력산업 · 미래 신산업 협업 촉진
- ③ 조합 공동사업지원자금 활성화

협동조합
제도개선

- ① 조합 설립 · 변경 유연화
- ② 지원정책 활용 애로 개선
- ③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 ④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1

중기협동조합 시장 대응능력 강화

①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협상력 강화 방안 마련

- (협의요청권 부여) 중기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대기업 등과 단체적 계약 체결시 거래조건 등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국정과제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협의요청권 부여' 반영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협의요청권) 주요 내용>

- ① 중기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와 단체적 계약* 체결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 가능

* 중기협동조합의 업무 중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 ② 거래 상대방에 협의에 응할 의무 부여

- ③ 협의에 미응대시 중기부에 조정 신청

- ④ 협의요청 및 협의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담합) 적용 배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오세희 의원, '25.1.20 / 김원이 의원, '25.2.7)

② 중기협동조합의 주요 공동사업인 단체표준 지원체계 고도화

- ①노후화된 종합지원시스템 고도화, ②단체표준 보유시 직접생산 확인 실태조사 생략, ③단체표준 인증 전문가 양성 등 지원 확대

* (단체표준) 공공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전문분야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을 제정한 표준

③ 중기협동조합 성장단계별(초기-성장-도약) 맞춤형 지원 체계화

< 공동사업 지원제도 확대방안 >

	설립초기(예비) 설립 7년 이내 단계	성 장 단 계 안정적 공동사업 추진 단계	도 약 단 계 사업수익 5억 이상
기 존 사 업 확 대	전문인력 지원 설립운영 컨설팅 공동사업 SOS 컨설팅	혁신형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공동사업 지원자금	
		공동구매 전용보증	
		전담 주치의 컨설팅	
		협동화 자금	
신규사업발굴	지역 주력산업·미래 신산업 분야 맞춤형 신규설립(창업) 지원	공동사업 운영 안정화 지원	공동사업 다변화 (글로벌화·지역소멸 위기극복 등)

- KBIZ 온라인 교육플랫폼과 연계하여 조합 및 조합원사 교육 체계화

2 대내외 중기협동조합 환경변화 공동 대응

- ① 업종별·공정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활용·확산 분야를 발굴하고 AX·DX 전환 지원 및 인프라 보급·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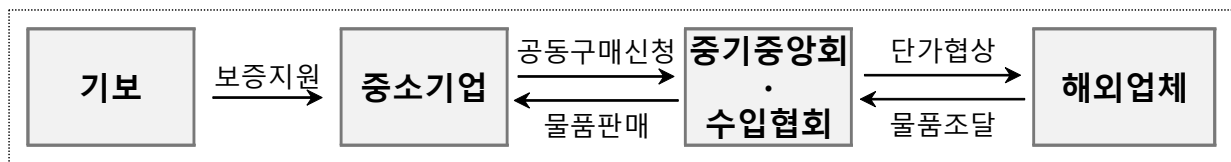
* 제조AI신속 상용화프로젝트(AX-Sprint 300) 지원사업 활용('26~'27년)

-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등과 연계하여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AI·디지털 활용 촉진 및 스마트 제조역량 고도화
- 중기중앙회에 전담부서(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25.1월)하고, 중기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업무 추가

- ② 원부자재 공동구매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해외 구매처로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원가 절감 및 조달 안정성 강화

- 국내 전용 금융거래 플랫폼 개선하고 협업기관(기업은행, 신·기보) 협력을 통한 재원 추가 확보

<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 지원절차(안) >



- ③ 기존 성과공유형 R&D사업을 보완한 ‘공동효과형 R&D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업종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중기협동조합이 R&D과정에서 중간조직 역할 수행을 통해 개발된 공통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

* 사업참여 조합 27개 중 25개 특허 출원(15개 조합), 평균 2.7명의 고용창출

- ④ 탄소중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기협동조합의 ESG대응 지원체계 확대

- (탄소중립)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표준 탄소중립 대응체계 구축 지원
- (재해예방) 중대재해 등 체계적인 산재예방을 위한 검사관리 인력 채용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자율 환경개선

3 중기협동조합 수출 경쟁력 강화

- ① 업종별 중기협동조합이 현지 진출하여 해외거점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 추진
 - 현지 상설전시장 및 판매장 운영 등 중기협동조합이 해외거점을 직접 구축하여 업종별 특화사업 추진
 - 수출(공동 전시·판매장 운영, 바이어 발굴), 수입(수입처 다변화, 공급망 구축·확대), 사후관리(인허가, A/S), 마케팅(네트워크, 정보제공) 등 다양한 역할 수행

글로벌 협업 진출 사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베트남·인도네시아에 '해외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의료기기제조 중기 합동 현지진출 지원
- △인허가 상담 및 허가 취득 지원 △현지 바이어 확보 및 매칭 △홍보 및 마케팅 △사후관리 지원



- ② 중기협동조합을 글로벌 공급망 대응 거점 채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육성·지원
 - * 공급망 3법(공급망안정화법, 국가자원안보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는 사업자단체(중기협동조합 등)를 거점채널로 활용토록 규정
 - ** 경제안보품목 관련 안정화 사업 추진(비축시설 구축, 수입처 다변화, 생산 확충, R&D 등) 시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우선 지원

< 중기협동조합 공급망 안정화 역할 확대방안 >

1단계	2단계	3단계
선도사업자 참여(선정) - 경제안보품목의 구입량·생산량·재고량·가격 파악 및 자료 제출	수입처 다변화 - 공동구매(수입) 확대 - 물류비용 절감 - 대체수입국가 확보 등	비축 및 생산시설 구축 - 비축시설 구축 - 공동생산시설 구축 - 공동 연구개발 등

- ③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에 중기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여 업종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구축(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ODA 진출 선도사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11년부터 ODA사업*을 다수 수행하면서, 아프리카, 동남아 현지의 농업현대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농기계 제조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
- * 농기계 개량보급,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 미곡처리 기술지원 사업 등 ODA 주관기관 역할



4 중기협동조합 지역 경제 기반 확대

- 지역 중기협동조합 육성조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공동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조합 활성화 인프라 확대(지자체 협업)
 -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 수립시 지역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

기금 활용 사례

【부산경남패션봉제산업협동조합】

- 부산 금정구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사업 공모 선정
- '24년부터 조합 주관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패션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추진 중



- 지역 주력산업·미래 신산업 분야 조합 신규 설립 지원하고, 지방중기청-지자체-중앙회지역본부의 협력체계 구축
 - * 공동 R&D, 기술 공유, 핵심인력 양성, 공동판매, 시험 장비 활용 등 지원
- 지역 조합·중소기업 지원 및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출연대상, 지원범위 확대(「중기협동조합법」 개정)

< 공동사업지원자금 개편(안) >

구 분	현 행	개 편
지원대상	중기중앙회 회원	중기중앙회 회원 및 일반 중소기업
출연대상	기업	기업,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 등
지원범위	공동기술, 정보화 사업 등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가

5 중기협동조합 제도 개선

- 중기협동조합의 설립시 최저 발기인 수 및 출자금 기준을 완화, 조직 유형변경 및 합병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중기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
- 중기협동조합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애로 요인 발굴 및 개선
 - * 개별 중소기업 중심의 평가체계 등으로 인해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평가기준이 불리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다수 존재
-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출자제도*, 준조합원제도** 도입 추진
 - * 비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및 잉여금 우선배당 가능하나 의결권과 선거권 없음
 - ** 의결권, 선거권은 없지만 조합의 주요사업 등에 참여·이용하기 위해 가입하는 조합원
-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근이사 연임제한 근거 마련
 - * 이사장 연임제한(2회) 규정은 마련('18.9월)되었으나, 실무를 총괄하는 상근이사의 계속 재임을 통한 조합 사유화 우려 방지(조합 정관으로 도입)